

제4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 제4부에는 2012년 한해 동안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권고사례 일부를 수록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으로 묶어서 게재하였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4부

주요 시정권고사례

1.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5호

언론사 : 노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월 3일자 연예면

기사제목 : 박○○ 양은이파 재건에 연루? “나 아냐… 억울해”

1. 보도내용

「... 1월 2일 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 따르면 강남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수익금을 챙기고 성매매, 폭행, 금품갈취를 일삼으며 양은이파 재건을 노리던 후계자 김 모 씨와 간부 등 조직원 6명의 추종 세력이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유명 그룹 멤버였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성을 가진 트로트가수 박○○이의 심받게 됐던 것. ... (중략) ... 한편 연루자는 1980년대 유명 그룹 ○○○○ ○○○의 멤버인 박○○ 씨로 알려졌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폭력조직 ‘양은이파’에 연루된 형사사건 피의자인 1980년대 유명그룹 ‘○○○○○○’ 멤버의 실명과 나이를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26호

언론사 : 시정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2월 2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슈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1. 보도내용

「수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제하의 보도 사진

대한민국이 보합니다

cijung

시정뉴스·시정TV

수퍼 폭행녀 동영상 파문, 폭행뒤 도주 왜 ?

시정뉴스 hubien@hubion.com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비록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피의자가 찍힌 CCTV 화면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리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2.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201호

언론사 : 조선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9월 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1. 보도내용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성폭력범죄 사건 보도 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현재 게재되어 있는 기사에서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삭제 또는 모자이크처리하기를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사진을 공개함

으로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와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선 안 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3. 사생활 침해 사례

의결번호 : 제2012-199호

언 론 사 : 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9월 1일자 1면

기 사 제 목 : 범인 고○○의 얼굴

1. 보도내용

「범인 고○○의 얼굴」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하며,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 초등생 성폭행



성폭행범 고충석(왼쪽), 지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의 이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 있던 것이다.



법행 사흘전 PC방 CCTV에 찍힌 모습 그는 거구였다.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범 고충석의 범행 사흘 전 모습이다. 지난 27일 저녁 8시쯤 한 PC방의 CCTV에 찍힌 장면(왼그림) 안. 175cm의 키에 몸무게가 80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고충석은 구레나룻과 뒷머리를 짧게 잘라 친 머리 스타일에 민소매 셔츠를 입고 PC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사진을 피의자의 사진으로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도 당시에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진을 성급하게 게재함으로써 제3자가 피의자로 오인 받아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또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언론사가 즉시 사과문을 게재하고 온라인판의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한 노력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이미 오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점과 향후의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위와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과 제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5호

언론사 : 투데이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24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1. 보도내용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여고생 교통사고 낸 후 성폭행...파렴치범들 징역선고

2012-05-24 16:52:57

세소영 기자 | dw184@todaykorea.co.kr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여학생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4호

언 론 사 : 투데이코리아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1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1. 보도내용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제하의 보도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생활을 침해하는 타인의 초상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어린이의 사진을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언론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어린이집서 잠자던 4개월 영아 숨져…경찰 수사

2012-05-11 17:29:53

서소영 기자 | dwit84@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4.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사례

의결번호 : 제2012-54호

언 론 사 : 한국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3월 10일자 20면

기 사 제 목 : ○○ ○○ml 50만 원에 판매 · 사제 폭탄 원료 즉시 배송

1. 보도내용

「... .운영자 A씨는 “○○○는 ○○ml 병에 담겨 있고 한 번에 ○ 방울씩 ○이나 ○○에 타서 마시면 된다”며 “○~○방울 정도 휴대용 병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작업’ 중인 여성의 ○○○에 타서 먹이면 ○○분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귀띔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 ○○ml(○○회분)를 ○○만 원에 팔고 있었다. A씨는 “○○버스 ○○○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2시간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며 “○○○ 외에 ‘○○○○’, ‘○○○○’라 불리는 ○○○ ○○○도 ○○만~○○만 원에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고 기억상실 구토 등 부작용이 덜한 ○○○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강조했다. ... (중략) ... 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서 ○○○ 제조법을 보고 ○○○○○○○(○○○) 등 원료 물질을 구입, 석 달에 걸쳐 ○○○를 직접 만들었다. ... (중략) ... 안씨가 제조한 ○○○ ○○Og은 시가 ○○○원어치로 2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 (중략) ... 사제 마약 제조 · 구입법은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단속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글 야후 등 외국 포털사이트에 더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대부분 “○○○에 ○○○○○○ 또는 ○○○○○ 적당량을 섞어 가열하면 ○○○를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준다. ○○○은 현재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로 지정돼 일반인은 구매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원료 삼아 만든 ○○○ 또한 불법 물질”이라면서도 “인터넷에 올라온 제조법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

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 ○○○)의 제조원료인 ○○○의 명칭 및 제조방법뿐 아니라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가격, 사용량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01호

언 론 사 : 인터넷 경향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3월 22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흥대 클럽에서 신종마약 판매한 미군 검거

1. 보도내용

「... 서울 용산 경찰서는 신종 마약인 일명 ‘○○○○(○○○-○○○)’를 클럽 출입자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ㄱ씨(24)등 미군 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 (중략) ... 이후 ㄱ씨는 강씨에게 소개받은 내국인 들에게 마약 ○개비 당 ○○~○○원을 받고 팔았다. 벌어들인 돈은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백색가루로 되어 있는 마약을 ○에 녹인 뒤 ○○○○에 뿌려 ○○처럼 피우는 가 하면, ○○○○을 태운 연기가 ○○○으로 들어가게 한 뒤 이를 집단으로 마시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는 강도가 ○○○의 6배 정도인 신종 마약”이라며 “정확한 밀반입 경로와 추가 흡연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마약(○○○○, ○○○-○○○)의 명칭뿐 아니라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 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해당 마약을 알지 못하던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59호

언 론 사 : 호남매일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6월 14일자 15면

기 사 제 목 : 신종수법 마약사범 4명 구속

1. 보도내용

「○○를 ○○하는 신종수법으로 ○○○을 상습 투약한 40~50대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중략 … 특히 원씨는 주사기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투약자를 위해 일명 ‘○○○○’ 수법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종수법은 ○○○을 ○○○위에 놓고 ○○한 후 이를 ○○이 담긴 ○으로 보내 미세한○○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 방식이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을 투약하는 신종수법의 명칭(○○○○○)을 적시하고, 투약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약물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5. 자살관련 상세묘사 사례

의결번호 : 제2012-17호

언 론 사 : 인천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1월 3일자 4면

기 사 제 목 : 시청 ○○부 입단 예정 선수 숙소에서 목 매 숨진채 발견

1. 보도내용

「... 2일 ○○경찰서와 체육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10분쯤 ○○구 ○○동 ○○시청 선수 숙소에서 ○○시청 ○○부 입단을 앞두고있던 오모(21)씨가 창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후배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 (중략) ... ○○체고를 졸업하고 ○○ 소속으로 지내며 지난해 ○○○ ○○올림픽 ○○○급 대표로 출전하는 등 유망주였던 오씨는 2일 ○○시청 복싱부 입단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만 아니라 입단 예정 기관명, 경력사항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12호

언 론 사 : 스포츠한국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4월 18일자 29면

기 사 제 목 : 1년 만에 또 자살... 여전히 숨막히는 ○○○○

1. 보도내용

「지난해 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수가 잇달아 자살해 큰 충격을 던졌던 ○○○○○○○(○○○○)에서 또 1명의 학생이 학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중략) … 17일 오전 5시 40분쯤 ○○ ○○구 ○○동 ○○○○교내에서 이 학교 ○○○과 4학년 김 모 군이 기숙사 앞 잔디밭에 쓰러져있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발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 (중략) … ○○에서 ○○고를 나와 ○○○○년 ○○○○에 입학한 김군은 2010년 군복무를 위해 휴학했다 올해 2월 복학했으며 평소 학교 성적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모 대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나이와 소속 학과 등을 밝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출신고교, 성적, 군복무 여부 등을 기술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27호

언 론 사 : 인터넷 한겨레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5월 21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대 신입생 기숙사에서 투신 사망

1. 보도내용

「○○대 신입생이 21일 오전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부 1학년 하아무개 씨가 ○○캠퍼스 기숙사에서 투신해 숨졌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모 대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성과 나이뿐 아니라 소속 학교 · 학부 · 학년 등을 밝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사회통념상 자살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6. 범죄수법 상세묘사 사례

의결번호 : 2012-159호

언 론 사 :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2월 28일자 22면

기 사 제 목 : ‘마약 ○○○’ 먹인 뒤 내기골프 1,000만 원 탄 일당 ‘덜미’

1. 보도내용

「... 홍씨 등은 지난해 4월과 7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 모(51) 씨와 내기 골프를 치며 신경안정제 ○○○○와 마약인 ○○○ 등을 섞은 ○○○를 유씨가 마시게 해 총 1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탄 혐의를 받고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구입경로, 환각적 효능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거나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죄 수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의결번호 : 제2012-141호

언 론 사 :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 2012년 6월 19일자 사회면

기 사 제 목 : ‘○○’ 판매한 현역군인-구매자 적발

1. 보도내용

「... 지난해 12월경부터 개인·단체 블로그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 판매, 간단하게 ○에 타 먹이면 끝, ○○·○○, 몇 ○○에 강력한 효과, 당일배송·전국배송”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가짜 ○○(○○○)를 ○통에 ○○~○○만원을 받고 판매해 약 9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을 이용해 구매자와 통화를 하고 의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을 배송한 ○○○○ ○○를 통해 판매대금을 ○○로 지불케 하는 방법으로 안심시킨 후 ○○○○으로 입금케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관련 보도를 할 때 약물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가짜 마약 판매 사건을 보도하면서, 마약(○○)의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묘사하고, 판매 과정 및 방법 등을 필요 이상으로 기술하여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